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387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판 결 선 고 2022. 7. 14.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나87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상고이유 2)

원심은,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채권양도계약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선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3)

원심은 피고가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